

#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증 개정조례(안)

##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4년 12월 22일

- 회부일자 : 1994년 12월 22일

3. 개정이유

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기준 등에 대한 현행 도 조례증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조문을 개정 보완하여 점용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### ○ 도로점용료 산정기준

· 점용면적의 산정 (조례 제3조 제8항)

- 2개 이상의 관을 같은 목적으로 설치시 개개의 관이 크기를 각각 산정

→ 전체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함

· 점용료 산정기준표 (별표 1)

- 점용률의 종류란중 제2호 세분란의 송열관 다음에 「전기관, 통신시설관」을  
추가

### ○ 점용료의 조정 (별표 2)

- 점용료 조정산식의 납부할점용료란 조정산식중 「100분의 220을 100분의 200」  
으로 함.

## 5. 검토의견

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 본도 조례가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조문을 개정 보완하여 점용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고 도로부지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6.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

"따로 볼임"

불    임 : 개정조례안 1부.